

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

- 입찰건명 : 2025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5.11.14.
- 입찰방법 : 긴급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관련근거

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-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2)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

- '25.6.30.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

□ 긴급입찰공고 사유

- 용역사업 계약기간 내 과업 완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 추진이 필요하므로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업체 선정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.